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및 사망조위금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 재할 급여 지원요건 완화 및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재처분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심사의 전문성·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급여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등에 따른 재처분에 대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할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나. 심사역량 확충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을 현행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53조)

- 다. 매년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로 지정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추모 및 예우 주간으로 운영 (안 제7조의2)
- 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성 제고 (안 제10조)
- 마. 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의 하한액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퍼센트로 상향(안 제10조)
- 바. 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보호 제도 마련(안 제16조, 제16조의2, 제62조의2)
- 사. 재활급여 지원 대상을 공무상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심리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27조)
- 아.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해당 공무원의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43부터 100분의 63까지에서 100분의 47부터 100분의 67까지로 상향함(안 제38조)
- 자. 동일한 사유로 사망조위금 수급권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1개의 급여만 지급하도록 근거 명확화(안 제43조)
- 차. 개정 민법(법률 제20432호)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급여 지급 제한(안 제44조)
- 카. 장기간 요양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직무복귀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2)
- 타. 공무상 재해와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통계의 목적·작성 범위를 확대함(안 제57조의3, 제57조의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22.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인 공무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제3호 각 목의 급여 결정을 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100명”을 “20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의회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5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직무 복귀 및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추모 및 예우 주간으로 운영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모 및 예우 주간에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념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날이”를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에게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퍼센트를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급여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부당수령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이하 “신고자”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따라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인사
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고요건,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이라”를 “가능성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무상 요양 중인”을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심리상담기관을 지정하고 공무원이 해당 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비를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43퍼센트”를 “47퍼센트”로 한다.

제4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의 사망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급여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사망조위금만 지급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단계적 복귀 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장기간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근무장소·직무내용 및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이하 “단계적 복귀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단계적 복귀 지원을 위하여 진료 또는 상담 등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전환교육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단계적 복귀 지원의 대상 및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를 제5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6조의5) 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원상 재해 현황에 관한”을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인사혁신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를 “인사혁신처에”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5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공무상재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고, 공무상 재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재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받게한 자
2.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제7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47조의2, 제57조의4, 제62조의2의 개정규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7조의3의 개정규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기념일 운영에 관한 준비행위)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의2에 따른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급여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1항단서에 따른 급여액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법률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생략)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이 공무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이 공무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제3호 각 목의 급여 결정을 하는 경우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 200명 ----- .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의회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회의 회의는 <u>위원장과</u>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⑤ -----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이하로 구성한다.

⑥·⑦ (생략)

<신설>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그 위원)과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
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순직공무원의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직무
복귀 및 재해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 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추모 및 예우 주간으로
운영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모 및
예우 주간에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념일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

----- 날(퇴직으로 급여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하 “기준소득월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이라 한다)의 160퍼센트(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

다만,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족에게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퍼센트를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

-----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후단
신설>

2. 3. (생략)

② ③ (생략)

<신설>

<신설>

징수하고, -----

--.

1. -----
----- . 급여의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경우를 포함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급여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의2(부당수령 신고 및 포상
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이하
“신고자”라 한다.) 제16조제1항
제1호 따라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람을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
위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생 략)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고요건,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활운동비) ① -----

----- 가능성이 있다 -----

-----.

1. (현행과 같음)
2. -----
----- 6개월

략)

<신 설>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 략)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④ (생 략)

<신 설>

행과 같음)

④ 공무원의 사망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급여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사망조위금만 지급한다.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대한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단계적 복귀 지원) ①

제46조의5(공무상 재해 통계) ① 국가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장등은 장기간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근무장소·직무 내용 및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이하 “단계적 복귀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등은 단계적 복귀 지원을 위하여 진료 또는 상담 등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직무전환교육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단계적 복귀 지원의 대상 및 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4(공무상 재해 통계) ①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
-----.

② -----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

-----.

③·④ (생략)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⑤·⑥ (생략)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① -----
----- 인사혁신처 -----
-----.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인사혁신처에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100명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공무상재해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고, 공무상 재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제62조의2(벌칙) (생략)

<신설>

수 있다.

제62조의2(벌칙) ① (현행 제62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분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받게한 자

2.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 8135